

#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6년 8월 20일

회부일자 : 1996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임시회

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( '96. 8. 30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송원호 )

가. 제정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「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」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-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○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

-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,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
-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,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도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파견된 자 등

○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

-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

(충청북도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육군5019부대, 1987부대, 공군3579부대,  
충청북도교육청, 충청체신청, 대전지방국토관리청, 대전·영주지방철도청,  
청주지방노동사무소, 청주기상대, 기타 재해관련기관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등을 지방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날로 늘어나는 자연 재해에 대하여 지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당해 기관 지방청 소속 공무원을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 : "생략"

### 5. 토론 요지

- 자연재해 발생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년중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재해기간을 하절기 (6. 15~10.15)로 명시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제한하는 것은 하절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능동적 대처가 지난하므로 재해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## 6. 수정안 요지

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(안) 제5조(재해기간 파견근무)의 조문중  
"재해기간(6. 15~10. 15)에"를 삭제

## 7. 심사결과

본 조례(안)중 제5조(재해기간 파견근무)의 조문중 "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  
기간(6. 15~10. 15)에 재해대책을 위하여"를 "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 
위하여"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
참석의원 7인 (만장일치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"없 음"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"없 음"

## 10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(안)
-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- 조문대비표